

2016년 상반기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소개 I

1. 백내장 수술시 사용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2016-3호)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안과의원에서 ‘양안백내장’ 진단받고 초음파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 B 보험회사는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 비용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결정내용〉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은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근거리 시력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면책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하지 않음

2.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2016-5호)

* ‘무지외반증’(拇趾外反症, hallux valgus)이란 엄지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이 튀어나와 중앙 쪽으로 굽어져 발의 형태가 변형된 것을 말함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무지외반증’ 진단하에 수술(원위 갈매기형 골절술) 및 입원치료, 이후 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수술 시행. B보험회사는 당해 보험약관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술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고정물 제거술은 골절부분이 접합된 후 필요 없게 된 고정물을 단순 제거하기 위한 부차적인 수술로서 보험약관상 수술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결정내용〉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해서는 골절술을 시행한 후 뼈의 고정을 위하여 내고정물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며, 몸 속에 내재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은 무지외반증 치료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치료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

3.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2016-6호)

* ‘리바운드 에어워커’란 발목 골절, 아킬레스건 손상시 발과 다리를 고정하는 장비를 말함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농구경기 중 상해사고 발생하여 우측 족근관절 염좌 및 양측 측부인대 파열로 입원하였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우측 하퇴부 고정치료 및 발목 관절의 운동치료를 목적으로 리바운드 에어워커를 사용함. B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된 보험은 입원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으나,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의치, 의수족,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보험약관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

〈결정내용〉

보조기(Orthosis)란 신체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 도와주는 역할과 과다한 힘이 들어가거나 변형이 생겼을 경우 신체를 적절한 형태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함. ‘리바운드 에어워커’는 발목 아킬레스건의 관절을 고정하거나 손상된 부위를 안정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며 하체 부분의 관절을 고정하여 압력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도와주는 장비임. 따라서 ‘리바운드 에어워커’ 구입비용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기 구입비용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4. ‘추상장애’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상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 여부(2016-7호)

* ‘추상장애’란 질병·사고로 인해 발생한 흉터가 성형이나 재건수술 이후에도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함

〈사실관계〉

피보험자 A는 우측안구에 발생한 함몰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국가배상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5%의 장애진단을 받음. 보험회사 B는 당해 보험약관은 맥브라이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있는데,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에 따르면 외모의 추상장애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결정내용〉

당해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인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으나, 자동차상해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약관상 상해보험금 지급기준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추상장애에 대해서도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음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이수현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04 | E-Mail. leesh@shinkim.com |
| ● 정찬묵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35 | E-Mail. cmjung@shinkim.com |
| ● 백상미 변호사 | TEL. 02 316 4226 | E-Mail. smbak@shinkim.com |